
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15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3년간”을 “5년간”으로 한다.

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(이하 “종전의 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위원회 위원(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)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지역신문에 <u>15년</u>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10년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벌칙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(還收)하여야 하고,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부터 <u>3년간</u> 기금을 지원하여</p>	<p>제20조(벌칙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<u>5년간</u>-----</p>

서는 아니 된다.

④ (생략)

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
특별법 부칙

②(유효기간) 이 법은 2022년 1
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
특별법 부칙

<삭제>